

# 임업분야 최초 외국인 근로자 도입

고용허가제(E-9) 통해 '24. 3회차(7월 예정) 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

##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

고용허가제를 통한  
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 
'24. 3회차(7월 예정)  
부터 실시



임업분야에 신규 도입되는  
외국인력은 1천명



법인사업자로 등록(한국표준산업분류상 '임업'(020) 중  
임업 종묘 생산업(02011), 육림업(02012),  
벌목업(02020), 임업 관련 서비스업(02040)

## 외국인근로자 임업특화교육

외국인근로자의  
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제고

\*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 
임업의 기초, 안전사고예방 및  
응급처치, 기본장비 사용법  
교육



##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신청 조건

- 1 내국인 구인 노력(워크넷 등을 통해 구인신청, 7일 이상)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**지원자 X**
- 2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**고용조정 X**
- 3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**체불임금 NO**
- 4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

## 산림사업의 시기별 업무 변동량을 고려 「근무처 추가」 제도 마련 예정

사업장 이동이 가능  
원사업장 ↔ 추가사업장

\*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원사업장 자동복귀



## 외국인근로자 도입 효과

청년층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업현장의 고용안정, 인건비 경감,  
안정적인 산림관리 기대

